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창 업 경 제 과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구 미 시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창업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전문 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육성

나. 이에 투자조합 출자금을 2027회계연도(본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출자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1) 대상기관

기관명	인라이트벤처스㈜
대 표	박문수
설립일	2017. 7. 10.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메이커스페이스동 2층

(2) 출자예정액 : 25억원

- 24년 5억원(20%), 25년 7.5억원(30%), 26년 7.5억원(30%), 27년 5억원(20%)

(3) 출자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0조

나. 투자조합 개요

(1) 조 합 명 :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2) 운 용 사 : 인라이트벤처스㈜

(3) 출 자 자 : 인라이트벤처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산업은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미시, 재단법인, 상장기업, 투자기관

(4) 결 성 액 : 595억원(시비 25억원)

(단위:억원)

구 분	출자기관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595	115	182.5	178.5	119
GP(운용사)	인라이트벤처스㈜	45	9	13.5	13.5	9
LP(출자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00	40	60	60	40
	한국산업은행	50	10	15	15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0	10	15	15	10
	구미시	25	5	7.5	7.5	5
	재단법인	170	34	51	51	34
	상장기업	35	7	10.5	10.5	7
	투자기관	20	0	10	6	4

(5) 존속기간 : 8년(투자4년, 회수4년)

(6) 투자대상 : 비수도권 소재 산업부 11대 핵심투자분야 기업

(7)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한국성장금융「기술혁신전문펀드 5호(지역산업활력)」선정 (24년)
- 1회 출자금 납입 (24년) 및 2회 출자금 납입 (25년)
- 3회 출자금 납입 (26년) 및 4회 출자금 납입 (27년)

(8)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환경변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전략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외부기업 유치 등의 정책목적 달성

다. 출자 필요성

(1) 구미시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많으나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기계, 자동차,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의 기존 산업과 최첨단 신기술을 연계한 융합산업 육성

(3)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 유망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3)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나. 예산조치 : 2027년 본예산 편성(5억원) * 출자예정액 25억원

다. 합　　의 : 예산재정과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③ 생략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지원대상)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인라이트 넥스트 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재정수반요인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출자 제안서 상 구미시, 재단·기업·투자기관 출자금액 책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출	500	750	750	500	2,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시 비	500	750	750	500	2,500
합 계	500	750	750	500	2,5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창업경제과 창업투자팀 임형석(☎480-6052)

소 관 부 서		창업경제과
입	과 장	권 미 영
안	팀 장	전 기 훈
자	담 당 자	임 형 석 (480-6052)